〈자　　료〉

西獨의 「임미시온」保護法

(Bundes-Immissionsschutzgesetz—BImSchG)

鄭　　在　　吉*

一. 머리에

오늘날 環境保護·公害防止問題는 세상 뭇 사람들이 膾炙하고 있으며 크게는 人類의 生存과 直結되는 重大한 「이슈」로 登場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生態學者, 環境論者, 經濟學者 및 社會學者等 環境·公害關係專門家들의 主張을 듣기도 前에 이미 環境·公害問題는 眼前周邊에 深刻하게 展開되고 있지 않는가?

當代의 社會現象을 診斷(問題把握)하고 處方箋(解決對策)을 求함이 社會科學의 任務일진대, 法學的側面에서 본 環境·公害問題가 이른바 環境法(Umweltrecht; Environmental Law)이라는 第3法의 領域[1]으로서 그 固有의 硏究對象과 範圍가 限界지워짐은 當然하다.[2] 어쩌면 成長一邊倒의 經濟政策이 낳은 副產物이기도 한 環境汚染·公害問題에 대하여 先進國에서는 일찌기 對策을 樹立·施行해 오고 있다. 富의 增大라는 量的膨脹은 質的變化를 要求하고 이는 곧 「삶의 質」(Quality of Life)의 向上을 希望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經濟發展이란 단순한 富의 擴大만이 아니라 生活의 質的向上을 포함한 복합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環境保全法(法律 第3078號)[3], 海洋汚染防止法(法律 第3079號)이 一端은 基本法으로서 1977年 12月 31日에 制定·公布되어, 1978年 7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으며 1980年初에 環境廳이 保社部의 外廳으로 發足되고 內務部에 自然保護擔當官制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環境保護·公害防止에 대한 制度的裝置가 加一層 强化됨으로써 史上 劃期的인 里程表가 되었다. 그리고 第5共和國憲法에 있어서 環境權[4]이 生存權的基本權의 하나로 新設되었는데 이는 대단히 重要한 것으로 注目된다.

한편 學界에서는 環境法學會가 1977年 12月 7日에 結成되어 硏究發表會, 學會誌發刊[5]等 적극적으로 活動하고 있으며 1970年代 以後 우수한 關係論文과 單行本等이 發表·刊行되고 있다. 또한 法科大學 敎

---

* 全北大學校 專任講師, 民事法

(1) 勞動法, 經濟法과 아울러 「社會法」이라는 큰 領域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C 後半의 勞動法, 20C 前半의 經濟法, 20C 後半의 環境法의 生成·發展은 종래의 公·私法의 中間領域으로서 그 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環境·公害問題의 解決은 同一現象에 대한 諸學問의 接近方向과 態度가 固有하면서도 協同的이어야 하므로 學際的(interdisciplinary) 硏究方法이 本道이기는 하다. 또한 環境法은 學問的 歷史가 日淺하기 때문에 현재 그 對象과 範圍가 明確히 確立되어 있지는 않다.

(3) 종래의 公害防止法(1963. 11. 5. 公布, 法律 第1436號로 制定되고, 1971. 1. 22에 大幅 改正된 바 있음)은 이 法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이 法에 대한 解說集으로는 具然昌 敎授와 柳淳錫 檢事가 各各 單行本으로 낸 바 있다.

(4) 環境權理論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우선 金哲洙, 現代憲法論(博英社, 1979), pp. 455-476; 具然昌, 「環境權思想」, 法과 公害(韓國法學敎授會編, 1974), pp. 331-372; 全昌祚, 「環境權의 確立」, 法과 環境(韓國法學敎授會編, 1977), pp. 201-234. 등 參照.

(5) 韓國環境法學會, 環境法硏究(創刊號, 1979).

科課程에 環境法(公害法)이 獨立된 敎科目으로 設定된 學校[6]가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此際에, 本稿에서는 西獨의 環境保護에 관한 聯邦統一法인 「聯邦 Immission 保護法」을 紹介하고자 한다. 이 法律의 本名은 「大氣汚染, 騷音, 振動 기나 類似한 事象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의 保護를 위한 法律」[7]이나 「연방 Immission 保護法」(BImSchG)로 約稱하여 使用되고 있다. 이 法은 1973年 2月 14日 聯邦議會에 提出되어 1974年 3月 15日에 成立(通過)되었고 同年 3月 21日에 公布된 후 약간의 修正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法은 全部 7章 74條로 構成되어 있다. 總則(第1章)에는 法의 目的, 適用領域, 槪念規定이, 施設의 設置와 營業(第2章)에는,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 必要로 하지 않는 施設,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調査가, 또한 第3章에는 施設, 原材料, 製造物, 燃料 및 發動燃料(Treibstoffen)의 狀態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 나아가 第4章에서는 交通機關의 狀態와 運行, 道路 및 航道의 建設과 變更을, 第5章에서는 聯邦領域에 있어서의 大氣汚染의 監視와 大氣淸淨維持計劃을, 第6章에서는 共通規程을, 第7章에서는 終末規程을 規定하고 있다.

本稿는 聯邦 「임미시온」 保護法[8]의 成立背景과 同法의 特徵을 간단히 살펴보고 原文을 번역·소개한 뒤에, 나아가 獨逸民法(BGB)과의 關係를 叙述하고 끝맺을까 한다.

二. 成立背景과 特徵

1. 從來의 「임미시온」 關係法

(1) 從來 環境保護라고 하는 槪念은 憲法上에는 存在하지 않았다. 그러나 環境保護에 대한 憲法上의 根據를 찾으려는 努力은 계속되어 왔다.[9] 基本法上 環境保護 및 環境權에 關聯된 規定으로는 第1條①項(人間의 尊嚴), 第2條①項(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의 權利), 第2條②項(生命, 身體의 不可侵) 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條項을 끌어 들어 社會國家理念(基本法 第20條①項, 第28條①項)을 基礎로 한, 個人主義的 自由權에서 社會的基本權에로의 解釋轉換(Uminterpretation), 또는 基本法 第2條를 社會的 基本權에 補充하려는 시도 등의 努力을 해 왔다.[10] 그 가운데에 環境權을 基本法 第1條와 第2條에 基한 社會的基本權으로서 承認하는 見解와 이와 反對로 「프로그람」的 規定으로 생각하는 見解가 있다.[11] 消極說에 立脚한 C.H. Ule는, 基本法 第1條, 第2條는 環境保護에 關한 憲法上의 根據가 될 수

(6) 全北大學校 法學科 4學年 專攻選擇. 美國에서는 1968年부터 新設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法科大學이 環境法을 독립된 敎科目으로 設定하고 있다고 한다.

(7)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vom 15, März 1974, (BGBI. IS. 721).

(8) 이 法에 관한 代表的 文獻을 몇가지 紹介한다. ① C.H. Ule,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Kommentar/Rechtschriften, 1974ff. (以下 Kommentar라고함); ders., Umweltschutz in Verfassungs- und Verwaltungsrecht, DVBI. 1972, S. 437ff(以下 DVBI. 1972라고 함)
② H. Engelhardt,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Kommentar, 1975.
③ G. Schwerdtfeger, Da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NJW 1974, S. 777ff.
④ G. Feldhaus, Konturen eines modernen Umweltschutzrecht, DÖV 1974, S. 613ff.
⑤ F. Baur, Die privatrechtlichen Auswirkung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JZ 1974, S. 657ff.
⑥ C.H. Ule, Da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DVBI. 1974, S. 324ff.
⑦ E. Rehbinder, Immissionsschutzrechtlicher Gefahrenbegriff-Beurteilung von Störfällen durch äußere Einwirkungen, BB 1976, S. 1ff.

(9) C.H. Ule, Umweltschutz im Verfassungs- und Verwaltungsrecht, DVBI. 1972, S. 437ff.

(10) E. Rehbinder, Grundfragen des Umweltrechts, ZRP. 1970, S. 250ff.; H. Rupp, Die verfassungsrechtliche Seite des Umweltschutzes, JZ 1971, S. 401ff; W. Weber, Umweltschutz im Verfassungs- und Verwaltungsrecht, DVBI. 1971, S. 806ff.

(11) H. Dellmann, Zur Problematik eines 》Grundrechts auf menschenwürdige Umwelt《, DÖV 1975, S. 589ff; R. Scholz, Nichtraucher contra Raucher, JuS 1976, S. 232ff; J. Lücke, Das Grundrecht des einzelnen gegenüber dem Staat auf Umweltschutz, DÖV 1976, S. 289ff.

없다고 하면서 憲法上의 根據는 결국 立法權限에 관한 基本法의 規定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12]

(2) 그런데 基本法에는 環境保護에 관한 立法權限을 明示한 것이 없다. 特別히 明示的으로 聯邦立法權限事項으로 定하지 않고 州가 立法權限을 갖는 것(基本法 第7條①項)으로 되어 있다.[13] 環境保護에 관한 統一的 法規制를 위한 權限이 基本法에는 規定되어 있지 않으나, 약간의 領域에 個別的인 規制權限이 規定되어 있을 뿐이다. 즉, 專屬的立法事項으로서 聯邦鐵道·航空機(第73條 6號), 競合的立法事項으로서 經濟法(第74條11號), 核「에너지」關係 (第74條11號a), 農林漁業關係(同條17號), 食品等 去來保護·樹木·植物·動物保護(同條20號), 道路交通·自動車運行(同條22號), 大綱的 立法事項으로서 自然保護·景觀保護·水管理(第75條)가 있다.

이러한 規定에 基한 環境關係立法은 대략 다음과 같다.

a) 聯邦法

① 營業經濟部門;「營業法」과 「同法施行을 위한 技術的 要綱」.

② 建設部門;「建設騷音防止法」[14]

③ 自動車關係部門;「道路交通許可令」[15], 「벤진鉛法」[16], 「道路交通令」[17],

④ 航空部門;「航空運送法」, 「航空運送許可法」, 「航空機騷音防止法」[18],

⑤ 內航水運部門;「內航水運領域에 있어서 聯邦의 任務에 관한 法律」[19] (第3條1項 ii)

⑥ 기타;「大氣淸淨維持를 위한 豫防措置法」[20], 「라이히自然保護法」[21], 「植物保護法」[22], 「水管理法」[23], 「洗劑中 淨化劑에 관한 法律」[24], 「廢油法」[25], 「原子力法」[26] 등,

b) 州 法

聯邦法으로 規制될 수 없거나 聯邦에 立法權이 없는 事項에 대하여는 各州에서 「임미시온」防止法을 制定한다. 例컨대, 1964年에서 1970年사이에 Baden-Würtenberg, Bayern, Brem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等 6個州의 例가 있다. 그밖의 州에서는 警察法에 規制하고 있다. 이를테면, 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等의 各州에는 1962年부터 1966年 사이에 騷音防止를 위한 州警察命令이 있다. 또한 聯邦環境廳의 設置以前에도 Bayern州環境廳이 設置되었다.[27]

---

(12) Ule, a.a.O., S. 438.

(13) 聯邦의 立法權限에는 專屬的立法事項(第73條), 州와의 競合的立法事項(第74條), 大綱的 規定(Rahmenvorschriften)을 設定하는 權限(第75條)이 있다.

(14) Gesetz zum Schutz gegen Baulärm vom 9.9. 1965 (BGBI. IS. 1214).

(15) 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StVZO) vom 6.12. 1960 (BGBI. IS. 897).

(16) Benzinbleigesetz (BzBIG) vom 5.8. 1971 (BGBI. IS. 1234).

(17)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vom 16.11. 1970 (BGBI. IS. 1565).

(18)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vom 30.3. 1971 (BGBI. IS. 282).

(19)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Binnenschiffahrt vom 15.2. 1956 (BGBI. IIS. 317). 이 法律은 1965.6.21에 改正된 바 있다 (BGBI. IIS. 873).

(20) Gesetz über Vorsorgemaßnahmen zur Luftreinhaltung vom 17.5. 1965 (BGBI. IS. 413).

(21) Reichsnaturschutzgesetz vom 26.6. 1935 (RGBI. IS. 821).

(22) Pflanzenschutzgesetz vom 10.5. 1968 (BGBI. IS. 352) in der Fassung des Anderungsgesetz vom 27.7. 1971. (BGBI. IS. 1161)

(23)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1957)는 그후 4次 改正됨 (1976.4.26).

(24) Gesetz über Detergention in Wasch- und Reinigungsmittel vom 5.9. 1961. 이 法律은 後에 Waschmittelgesetz vom 20.8. 1975 (BGBI. IS. 2255)로 代替되었다.

(25) Altölgesetz vom 23.12. 1968 (BGBI. IS. 1419).

(26) Atomgesetz vom 23. 12. 1959 (BGBI. IS. 814).

(27) Verordnung über das Bayerische Landesamt für Umweltschutz vom 15.12. 1971 (GVBI. S. 453).

2. 基本法의 改正과 「임미시온」關係法

(1) 基本法의 改正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主로 州政府에서 다루었던 環境政策이 1960年代末부터 聯邦政府의 重點施策으로 되었다. 1969年 Brandt 內閣은 環境保護를 重點施策으로 宣言하고 翌年에는 環境保護上의 緊急問題解決을 위한 「緊急프로그람」(Sofortprogramm)을 定하였다. 게다가 1971年 聯邦政府는 「聯邦政府의 環境프로그람」[28]을 定하여 같은 해 가을에 聯邦議會에 提出하였다. 이 「프로그람」은 環境計劃, 環境保全, 사람에 의한 侵害에 基한 不利益들의 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綜合的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a) 事前配慮의 原則(Vorsorgeprinzip), b) 原因者負擔의 原則, c) 環境保護의 實效化를 위한 聯邦, 州, 市道郡, 硏究敎育機關, 市民의 共同責務와 協力 및 國際協力의 要請을 主要한 支柱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람」의 實現을 위하여 聯邦에 의한 統一的規制가 必要하고, 國際協力 特히 EC諸國間의 國際的合意義務의 履行必要性이 指摘된다.

이러한 理由를 基礎로 聯邦政府는 1970年과 1971年에 水管理, 大氣淸淨維持, 騷音防止, 自然保護와 景觀保護, 廢棄物除去 等에 對하여 聯邦의 立法權限을 擴大하는 基本法改正案을 聯邦議會에 提出하였다. 그러나 水管理와 自然保護, 景觀保護에 對하여는 州와 聯邦參議院의 反對가 强하여 결국 1972年 4月 12日 「第30次 基本法改正法」[29]에 의하여 廢棄物除去, 大氣淸淨維持 및 騷音防止의 3가지는 聯邦의 競合的 立法權限事項으로 인정되게 되었다(基本法 第74條24號).[30]

(2) 基本法改正後의 「임미시온」 關係法

새로운 立法權限에 基하여 「聯邦廢棄物除去法」[31], 「聯邦임미시온 保護法」 및 「聯邦環境廳設置法」[32]이 制定되었고 聯邦環境廳이 西베르린에 設置되었던 것이다.

기타 主要立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自然保護部門 ; 「聯邦山林法」[33] 「聯邦自然保護法」[34], 「植物保護法 第 2 次改正法」.[35]

② 廢棄物除去部門 ; 「動物處理法」[36], 「廢油法改正法」.[37]

③ 化學物質部門 ; 「DDT去來에 關한 法」[38], 「飼料法」[39], 「醫藥品法改正法」[40]

④ 原子力部門 ; 「原子力法 改正法」[41]

---

(28) Umweltprogramm der Bundesregierung. BT-Drucksache VI/2710.

(29) Dreiß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74 GG-Umweltschutz) vom 12. 4. 1972 (BGBI. IS. 593).

(30) 水管理, 自然保護와 景觀保護에 관해서 聯邦이 大綱的 立法權限을 갖고 있음은 勿論이다.

(31) Gesetz über die Beseitigung von Abfällen (Abfallbeseitigungsgesetz-AbfG) vom 7. 6. 1972 (BGBI. IS. 873). 이 法律은 1976. 6. 21. 에 改正되었다.

(32)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Umweltbundesamtes vom 22. 7. 1974. (BGBI. IS. 1505).

(33) 本名은 「山林의 維持와 林業의 振興에 관한 法律」이다 (Gesetz über die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s Forstwirtschaft—Bundeswaldgesetz—vom 2. 5. 1975) (BGBI. IS, 1037).

(34)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undesnaturschutzgesetz-BNatSchG) vom 20. 12. 1976 (BGBI. IS 3573).

(35)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Pflanzenschutzgesetzes vom 15. 8. 1975 (BGBI. IS. 2172).

(36) Tierkörperbeseitigungsgesetz—Tier KBG—vom 2. 9. 1975 (BGBI. IS. 2313).

(37) Gesetz zur Änderung des Altölgesetzes vom 4. 5. 1976 (BGBI. IS. 1147).

(38)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DDT (DDT-Gesetz) vom 7. 8. 1972 (BGBI. IS. 1385).

(39) Futtermittelgesetz vom 2. 7. 1975 (BGBI. IS. 1745).

(40) Gesetz zur Änderung des Arzneimittelgesetzes vom 5. 6. 1974 (BGBI. IS. 1245).

(41) 1975. 7. 15에 3次, 1976. 8. 30에 4次 改正되고 1976. 10. 31에 5次 改正되었다.

⑤ 水規制部門 ; 「洗劑法」[42], 「水管理法 第4次改正法」[43], 「排水負擔金法」[44]

3. 特 徵

(1) 이 法의 成立前에는 各分野別로 規制法이 存在했으나 그 內容이 各樣各色이었다. 이 法은 目的, 適用領域에서 보는 바와같이 가장 包括的인 環境保護法이다. 聯邦法과 州法의 分裂이 廣範하게 除去되어[45] 聯邦의 環境法이 統一的으로 理解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 法은 聯邦環境法의 統一法으로서, 이로써 環境法에 있어서 聯邦法과 州法의 分裂狀態가 현저하게 改善되었다.

從來에 私法(§906 BGB)을 中心으로 발달되었던 「임미시온」의 槪念과 「에미시온(Emission)」이 定義되고 個別法規에 의하여 規律되었던 環境保護의 對象領域이 모두 이 法의 對象이 되었다. 그 결과 諸現象相互關聯性이 綜合的으로 다루어지고, 또한 申請者側의 申請節次가 容易하다는 利點도 들 수 있다.

(2) 이 法의 重要한 各種規制를 보면,

① 規制對象인 「施設」 自體가 廣範하게 把握되어 있다.

② 前부터 있었던 制度의 延長線上에 位置를 부여하여 施設의 設置·營業의 認可[46]에 더하여 종래 實務上으로 認定되었던 一部認可와 事前決定을 制度的으로 받아 들였다. 이에 實效性을 주기 위하여 事後的命令과 施設의 停止·休業·除去 및 認可의 撤回·失效를 規定하여, 엄격한 規制가 可能하도록 했다.

③ 認可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施設의 設置와 營業에 대하여도 環境保護의 基本義務, 行政廳에 의한 規制·禁止가 規定되어 있다.

④ 兩施設[47]을 通하여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調査·測定等을 規定하고 있으며 特定施設의 經營者에게는 「에미시온」 報告義務를 課하고 있다.

⑤ 施設에 使用되는 機械, 原材料, 燃料, 製造物等에 대하여 使用·去來·輸入·「임미시온」 限界値 등을 規制하고 있으며 國際協定등에 대하여도 配慮하고 있다.

⑥ 交通機關, 道路建設等에 의한 大氣汚染, 騷音 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그의 狀態·運行·建設·變更等에 관한 特別規定이 있고 交通機關에 대한 國際協定等의 配慮를 規定하고 있다.

⑦ 特別한 理由로 特히 현저하게 大氣가 汚染되거나 汚染될 염려가 있는 地域은 「負擔地域」으로 指定하여 當該地域에 대하여는 「에미시온」臺帳을 作成토록 하고 그 結果 一定한 狀況아래서는 「大氣淸淨維持計劃」을 作成하도록 하였다.

⑧ 特別한 保護를 要하는 地域에서의 大氣汚染, 騷音防止, 特定大氣狀況아래서의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規制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이 法의 實施를 위한 行政廳의 監督을 規定하고 特히 새로운 制度로서 「임미시온防止受任者」를 規定하여 重要한 權限과 獨立性·身分保障을 하고 있다.

(3) 이같은 엄격한 規制의 反面에, 規制를 받는 相對方의 利益을 위하여 ① 企業秘密의 保護, ② 經濟的, 技術的見地에서 規制制限, ③ 本決定에 앞서서의 事前決定, ④ 段階的決定으로서의 一部認可等을 規定하고 있다.

(4) 이 法에서 細目의 規制는 廣範하게 聯邦政府, 各部長官, 各州行政廳의 法規命令 또는 一般行政

---

(42) 本名은 「洗劑의 環境無害性에 關한 法律」이다.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 von Wasch- und Reinigungsmitteln—Waschmittelgesetz vom 20.8. 1975) (BGBI. IS. 2255).

(43)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Wasserhaushaltsgesetzes vom 26.4. 1976 (BGBI. IS. 1109).

(44) 本名은 「公共用水域에의 排水에 대한 負擔金에 관한 法律」이다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AbwAG vom 13.9. 1976) (BGBI. IS. 2021).

(45) 이 法에 의하여 廢止된 規定(法律) ; ① 營業法 第16條~第28條, ② 大氣의 淸淨維持를 위한 豫防措置法, ③ 建設騷音防止法.

(46) 認可節次는 종래의 營業法 第17條에 약간의 修正을 가했다. 또한 行政節次法(VwVfG)이 적용되지 않고 이 法上의 認可는 이 法의 獨自的 規定에 의한다.

(47)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과 認可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施設을 말한다.

規則에 委任했다. 이 경우 대부분 事前에 關係者의 聽聞을 거치고 聯邦議會(Bundesrat)의 同意를 要한다.

(5) 違反行爲에 대하여는 秩序罰을 科하고 중대한 것은 10萬DM 이하의 높은 罰金을 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重大한 違反行爲나 生命等에 危險한 一定한 行爲는 刑罰을 科한다.

(6) 認可로 인하여 影響을 받는 住民은 認可의 節次段階에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異議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은 取消訴訟[48]을 提起할 수 있다.

問題는 住民一般, 이웃사람들, 環境保全團體等이 訴訟提起를 하지 않는 點에 있다. 現行法上 이웃사람들(隣人)로서의 訴訟은 一定한 要件아래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와 反對로 단순한 住民으로서의 訴는 民衆訴訟(Popularklage)으로서 否定되고 있다.[49] 또한 團體訴訟에 關해서는 現行 西獨行政法院法 第42條 ②項 등으로부터 解釋上 許容될 수 없다는 것이 通說이지만 最近에는 이와 反對로 有力한 反對說이 解釋論이나 立法論으로 主張되고 있다. 이 問題는 現在 未解決의 問題로 남아 있으나 今後의 展開가 주목된다.[50]

(7) 이 法에는 計劃에 관한 規定으로서 負擔地域에 있어서의 大氣淸淨維持計劃(第47條)과 土地利用計劃(第50條)이 規定되어 있다. 後者는 公共事業等의 住居地域等에의 影響을 回避하기 위하여 土地利用上의 立地調整에 관한 것이다.[51]

三. 聯邦「임미시온」保護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사람, 動物, 植物 기타 事物을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 保護하고,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에 關한 限 다른 方法으로 惹起된 危險, 현저한 不利益(Nachteil) 및 현저한 苦痛(Belästigungen)으로부터도 保護하고[52], 또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의 發生을 豫防함[53]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領域) ① 이 法의 規定은 다음의 領域에 適用한다.

1. 施設의 設置와 營業
2. 施設, 燃料와 發動燃料, 原材料와 生產物等의 製造, 去來 및 輸入
3. 自動車와 그 連結車, 鐵道, 航空機, 船舶等의 狀態, 裝備, 運行 및 檢査
4. 公共道路, 鐵道, 및 市街鐵道等의 工事

② 이 法의 規定은 다음의 領域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飛行場[54]
2. 核에너지의 危險과 이온化한 放射線의 有害한 作用의 防止에 關한 限, 原子力法[55]의 規定 또는

(48) 取消訴訟의 提起는 行政處分의 停止的 效力이 있다. (§80 VwGO).

(49) Ule, DVBI. 1972, S. 444; Rehbinder, ZRP 1972, S. 255.

(50) Ule, DVBI. 1972, S. 445; ders., Zur Verpflichtungsklage im Umweltschutzrecht, BB 1972, S. 1076ff; Rehbinder, ZRP 1970, S. 255; H. Rupp, Popular Klage im Umweltschutzrecht?, ZRP 1972, S. 32ff; W. Thieme, Die Zulässigkeit von Umweltschutzklagen, NJW 1976, S. 705ff.

(51) 이외에도 汚染者負擔의 原則, 住民參加 등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52) 危險이란 損害發生의 客觀的 可能性이 明確히 存在하는 狀態를 말하고, 不利益이란 物理的 影響으로 因한 財產損害를 의미하며, 苦痛이란 肉體的, 精神的 快適이 毁損됨을 말한다.

(53) 여기에 事前配慮의 原則(Vorsorgeprinzip)을 선언하고 있다(第49條, 第50條 참조).

(54) 그러나 이 法 第70條 ⑥에 의하여 航空運送法 第11條가 改正된 결과 空航에 對하여는 이 法 第14條가 準用된다. 또 航空機 騷音에 關하여는 航空騷音防止法의 規定, 그 以外의 임미시온에 關하여는 航空運送法의 規定에 의한다.

(55) Atomgesetz vom 23.12. 1959(BGBI. IS. 814)는 Kostenermächtigungs-Änderungsgesetz vom 23.6. 1970 (BGBI. IS. 805)에 의하여 最終改正되었다.

이에 基하여 發한 法規命令에 따른 施設, 設備, 裝置, 核燃料 기타 放射性物質

第3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이라 함은 그 種類, 程度, 繼續에 따라 公衆 또는 이웃(Nachbarschaft)에 對하여 危險, 현저한 不利益 혹은 현저한 苦痛을 야기하는 임미시온을 말한다.

② "임미시온"이라 함은 사람, 動物, 植物 기타 事物에 影響을 주는 大氣汚染, 騷音, 振動, 빛, 熱, 光射線 및 類似한 環境影響을 말한다.

③ "에미시온"이라 함은 施設에서 나오는 大氣汚染, 騷音, 振動, 빛, 熱, 光射線 및 類似한 現象을 말한다.

④ "大氣汚染"이라 함은 空氣의 自然的인 構成이 變化한 것, 特히 煙氣, 검댕, 먼지, 가스, 浮遊物質, 蒸氣 및 臭覺刺戟物質等에 의하여 變化한 것을 말한다.

⑤ "施設"이라 함은

1. 事業場 기타 土地에 定着된 設備
2. 機械, 裝置 기타 移動可能한 工業的 設備 및 車輛等으로서 第38條에서 定한 것을 除外한 것.
3. 「에미시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物質이 貯藏 또는 堆積되어 있거나, 「에미시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勞動을 하는 土地로서 公共道路를 除外한 것을 말한다.

⑥ "技術水準"이라 함은 先進的인 工程, 設備 또는 營業樣式의 進步된 水準狀態로서 「에미시온」制限의 基準으로서 實際上 適合性이 확실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技術水準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營業에 있어 成功的이라고 實證된 여러 工程, 設備 또는 營業樣式들이 比較되어야 한다.

⑦ "加工, 改造 그 밖의 處理"는 "製造"와 같고, "이 法의 適用領域內에서의 그 밖의 利用"은 "輸入"과 같다.

第2章 施設의 設置와 營業

第1節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56]

第4條(認可) ① 그의 狀態 또는 營業에 의하여, 현저하게 環境에 對하여 有害한 影響을 주거나 다른 方法으로 公共·이웃에게 危險, 현저한 不利益 및 현저한 苦痛을 주는 施設[57]의 設置와 營業은 認可를 必要로 한다. 產業目的에 供하지 아니하고 經濟的 企業으로서 使用되지 아니하는 施設은 大氣汚染 또는 騷音에 의하여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현저하게 주는 경우에 限하여 認可를 必要로 한다. 聯邦政府는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에 關하여 關係者의 聽聞[58] 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定한다.[59] (要認可施設)[60,61]

② 地下資源의 調査 또는 採掘에 使用되는 鑛業施設은 認可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第5條(要認可施設 營業者의 義務)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은 다음과 같이 設置하고 營業하여야 한다.

1. 公衆과 이웃에게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 기타의 危險, 현저한 不利益 및 현저한 苦痛을 주지 아니할 것.

---

(56) 이는 從來 營業法(GewO vom 21.6. 1869; 1951.12.22 改正) 第16條 以下에 主로 規定된 事項들이다.

(57) 所謂 大規模排出源(Großemittenten)을 말한다(Ule, DVBI. 1972, S. 441).

(58) 同法 第51條 參照.

(59) 1975年 法規命令에 의하여 要認可施設로서 58個類型이 정해졌다(§2 Verordnung über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4. BImSchV—vom 14.2. 1975, BGBI. IS. 499).

(60) 여기의 認可를 받지 아니한 施設의 設置와 營業行爲는 秩序違反 또는 犯罪行爲로서 處罰된다(同法 第62條, 第63條 및 第64條).

(61) 종래 營業法 第16條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施設은 本法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同法 第66條 ①項)

2.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에 관한 事前配慮, 特히 技術水準으로 보아 「에미시온」 制限을 爲한 措置에 의한 事前配慮를 할 것.

3. 施設營業에서 생기는 殘存物은 合法的이고 無害하게 利用하거나 그의 利用이 技術的으로 不可能하거나 經濟的으로 代替할 수 없는 경우에는 廢棄物로서 秩序있게 除去할 것.

第6條(認可條件) 다음의 경우에는 認可해 주어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과 第7條에 基하여 發한 法規命令에서 생긴 義務의 履行이 確認될 때.

2. 施設의 設置와 營業이 다른 公法上의 諸規定과 勞動保護關係規定에 違反되지 아니할 때.

第7條(要認可施設의 設置, 狀態 및 營業에 關한 必要要件) ① 聯邦政府는,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의 設置, 狀態 및 營業은 第5條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고, 關係者의 聽聞(第51條) 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定할 수 있다.

1. 施設은 所定의 技術的 要件에 따를 것.

2. 施設에서 排出되는 「에미시온」은 所定의 限界値를 넘지 않을 것.

3. 施設의 營業者는 法規命令에 定한 所定의 節次에 따라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을 測定할 것.

② 前項 1, 2, 3의 必要要件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告示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 法規命令의 告示日字와 購入處를 明示하고

2. 告示를 特許官廳의 記錄簿에 記載하고 法規命令에 이를 表示하여야 한다.

第8條(一部認可)(62) 事前審査에 의하여 第6條의 條件이 充足되고 一部認可를 해 주는데 正當한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申請에 따라

1. 하나의 施設 또는 하나의 施設의 一部의 設置나

2. 施設의 一部의 設置 및 營業에 關하여 一部認可를 할 수 있다.

第9條(事前決定)(63) ① 行政廳은 計劃된 施設의 미치는 影響을 充分히 判斷할 수 있고 事前決定의 正當한 利益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申請에 基하여 個個의 認可要件과 施設의 立地場所에 관하여 事前決定에 의하여 判斷할 수 있다.

② 事前決定은 申請者가 異議를 提起한 後 2年以內에 認可를 申請하지 않으면 效力이 없다. 이 期間은 申請日로부터 4年까지 延長할 수 있다.

③ 第6條와 第21條의 規定은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10條(認可節次) 省略

第11條(一部認可와 事前決定에 있어서 第3者의 異議) 一部認可 또는 事前決定이 確定된 後에는 施設의 設置와 營業의 認可에 對하여 先行節次中에 主張하여 얻은 事實에 基하여서 異議를 提起하지 못한다.

第12條(認可의 附款) ① 認可는 第6條의 認可要件을 充足하기 爲하여 必要하면 條件과 負擔을 課할 수 있다.

② 認可는 所定의 申請期間을 定할 수 있다.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이 오직 實驗目的으로만 利用되는 경우에는 認可의 撤回를 留保할 수 있다.

③ 一部認可는 認可決定이 있을 때까지 一定期間 負擔을 課하거나 撤回를 留保할 수 있다.

第13條(認可와 다른 行政廳의 決定) 認可는 다른 關係行政廳의 決定, 特히 公法上의 認可, 許可, 特許, 承認 등을 包括한다. 私法上의 營業計劃의 許可, 計劃確認, 同意 및 水法과 原子力法의 規定

---

(62) 종래의 營業法 第18條에 關한 聯邦行政裁判所의 判決(例컨대 BVerwG vom 24.4. 1969, DVBI. 1970, S.215ff)과 州가 인정한 것을 立法化한 것이다(Ule, Kommentar, Rdnr. 1 zu §8 참조).

(63) 이 制度도 一部認可制度와 마찬가지로 從來 營業法에는 없었던 制度로서 行政實務와 判決(例컨대 BVerwG vom 29.3. 1966 E Bd. 24, S.23ff)에서 인정된 것을 立法化한 것이다(Ule, Kommentar, Rdnr. 1 zu §9; ders., DVBI. 1972, S.442. 참조).

에 基한 行政廳의 決定등은 例外로 한다.

第14條(私法上의 妨害除去請求權의 排除)[64] 認可가 確定된 施設에 對하여는 特別한 權原에 基하지 아니하고 私法上의 權原[65]에 基한, 土地로부터 이웃土地에 미치는 有害한 影響의 除去請求權에 의하여 그 營業의 停止를 請求할 수 없다. 이 경우에 有害한 影響을 排除하는 豫防手段만을 請求할 수 있다. 豫防手段이 技術水準으로 보아 實現不可能하거나 經濟的으로 代替할 수 없는 경우에는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第15條(要認可施設의 本質的 變更) ①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의 位置, 狀態 및 營業의 本質的 變更은 認可를 必要로 한다. 行政廳은 認可申請에 對하여 6月以內에 決定하여야 하고 審査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3月의 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

② 行政廳은 施設의 變更으로 인하여 부수적 또는 다른 「에미시온」을 排出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公衆 또는 이웃에게 危險, 不利益이나 苦痛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申請書와 資料의 內容을 調査하면 된다.

第16條(報告義務) 施設의 營業者는 第15條①項과 關係없이 添附資料를 包含한 認可申請書의 內容과 다른 點의 發生與否를 2年마다 行政廳에 報告할 의무가 있다.

第17條(事後的 命令) ① 이 法과 이 法에 基하여 發한 法規命令에서 생긴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는 認可를 준 後에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行政廳은 認可를 준 後에도 公衆이나 이웃이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 기타의 危險, 현저한 不利益 또는 현저한 苦痛으로부터 充分히 保護받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事後的 命令을 發하여야 한다.

② 行政廳은 命令이 當該 營業者 및 類似種類의 施設을 經營하고 있는 平均的 營業者에 의하여 經濟濟으로 代替할 수 없거나 技術水準으로 보아 實施不可能한 경우에는 事後的 命令을 發할 수 없다.

③ 命令의 履行을 위하여 施設의 位置, 狀態 및 營業의 本質的 變更을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命令에 確定的으로 定하지 아니하고 第15條에 따라 認可를 變更하여야 한다.

④ 위 ①②③項은 第67條②項에 規定된 施設과 이 法 施行前 營業法 第16條④項에 規定된 施設에 適用된다.

第18條(認可의 失效) ① 認可는 다음의 경우 效力을 喪失한다.

1. 認可廳이 定한 相當期間內에 施設의 設置 또는 營業이 開始되지 아니한 경우
2. 施設이 3年以上의 期間동안 營業되지 아니한 경우

② 認可의 必要性이 없어진 경우에는 認可는 效力을 喪失한다.

③ 認可廳은 이 法의 目的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 重大한 理由가 있을 때에 ①項의 期間을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延長할 수 있다.

第19條(簡易節次) ① 第4條①項 第3文의 法規命令은, 이러한 施設에서 생기는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 기타의 危險, 현저한 不利益 및 현저한 苦痛의 種類 程度와 期間이 公衆·이웃의 保護에 合致될 경우에는 所定의 種類와 範圍의 施設에 對한 認可는 簡易節次에 의하여 한다고 定할 수 있다.[66]

② 第8條～第14條는 簡易節次에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20條(停止, 休業과 除去) ①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의 營業者가 負擔 또는 事後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行政廳은 負擔 또는 命令을 履行하게 하기 위하여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營

---

(64) 獨逸民法(BGB)와의 關係에 對하여는(四)에서 論述한다. 이에 대한 詳細는 鄭在吉, 獨法上의 Immission 法理와 民法 第217條(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979) 參照.

(65) §1004 BGB.

(66) 現在 簡易節次에 의하여 認可하는 施設은 40類型이다(§4 Verordnung über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 —4. BImSchV—vom 14.2. 1975).

業을 停止할 수 있다.

② 行政廳은 認可없이 設置, 營業 또는 本質的變更을 하는 施設에 대해서는 休業 또는 除去를 命하여야 한다.

③ 行政廳은 環境에 대한 影響의 保護를 위한 法規定의 준수에 관련하여 그 준수에 의심이 立證된 事實이 있으면 營業者 또는 營業監督의 受任者에게 要認可施設의 營業을 停止할 수 있고, 또한 公共福利를 爲하여도 停止할 수 있다. 施設의 營業者에게 그의 申請에 의하여 施設의 合法的 營業을 위하여 擔保를 提供한 者로 하여금 施設의 營業을 할 수 있도록, 許可를 부여할 수 있다. 그 許可에는 負擔을 課할 수 있다.

第21條(認可의 撤回) ① 이 法에 의하여 주어진 適法한 認可는 다음의 경우에 全部 또는 一部가 장래에 향하여 撤回될 수 있고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1. 第12條 ②項에 따라 撤回가 留保된 경우
2. 負擔附認可의 경우 權利者가 이를 不履行하거나 法定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
3. 認可廳이 事後에 發生한 새로운 事實에 基하여 認可를 해 주지 아니할 權限이 있고, 또한 撤回를 하지 아니하면 公法上의 利益을 害치게 될 경우
4. 認可廳이 法規定의 改正에 基하여 認可를 해주지 아니할 權限이 있고 또한 撤回를 하지 아니하면 公法上의 利益을 害치게 될 경우
5. 公共福利에 대한 重大한 不利益을 豫防하거나 除去할 경우

② 認可廳은 認可의 撤回를 正當하게 하는 事實을 알게 되면 안 날로부터 1年以內에 撤回하여야 한다.

③ 撤回된 認可는 認可廳이 늦은 時點을 定하지 아니하는 限, 撤回 即時 效力을 喪失한다.

④ ①項 1.~5.에 의하여 認可가 撤回되는 경우에, 認可廳은 關係者의 申請에 의하여 認可의 存續을 信賴하여 입은 財産上의 損失을, 그 信賴를 保護할 價値가 있는 限, 補償하여야 한다. 그러나 財産上의 損失은 關係者가 認可의 存續으로 인하여 반드시 받았을 利益의 總額이 補償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補償額은 認可廳이 定한다. 補償請求는 認可廳이 關係者에게 通知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하여야 한다.

⑤ 州政府는 ④項 1.文에 관련된 補償義務의 決定에 대하여 別途의 規定을 할 수 있다.

⑥ 損失補償에 관한 紛爭은 正式訴訟에 의한다.

⑦ ①~⑥項은, 第3者에 의해서 異議提起된 認可가 先行節次 또는 行政裁判節次가 進行하는 동안에 取消된 경우에 그 節次를 通하여 抗辯 또는 主張이 救濟되지 않는 限, 效力이 없다.

第2節 認可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施設[67]

第22條(認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施設營業者의 義務) ① 認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施設의 設置와 營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으로 보아 回避할 수 있는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防止할 것.
2. 技術水準으로 보아 回避할 수 없는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은 最少限으로 抑制할 것.
3. 施設의 營業에서 나오는 廢棄物을 合法的으로 除去할 수 있을 것.

産業目的에 利用하지 아니하고 經濟的 企業經營의 範圍內에서 利用하지 아니하는 施設에 대하여는, 그 施設이 大氣汚染 또는 騷音等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防止 또는 抑制하는 裝置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의 義務만 있다.

---

(67) 從來 이 分野에 대한 公法上의 規制가 充分하지 못했던 것을 立法化했다. 認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施設로는 特히 中小企業, 手工業을 들 수 있겠으나 그 詳細는 Ule, Kommentar, Rdnr. 3 zu §22.

② 나아가 公法上의 規定을 違反하지 않아야 한다.[68]

第23條(不要認可施設의 設置, 狀態 및 營業에 대한 必要要件) ①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認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施設의 設置, 狀態 및 營業에 대하여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 公衆과 이웃을 保護하기 위하여 法規命令으로 다음과 같은 要件을 定할 수 있다.

1. 施設은 所定의 技術的 要件에 合致할 것.
2. 施設로부터 나오는 「에미시온」은 所定의 限界値를 超過하지 말 것.
3. 施設의 營業者는 法規命令에 定한 所定의 節次에 따라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測定을 할 것.

위 1.2.3의 必要要件에는 第7條②項을 準用한다.

② 聯邦政府가 ①項의 權限을 行使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州政府가 法規命令으로 ①項에 規定된 要件을 定할 수 있다. 州政府는 이 權限을 하나 또는 多數의 上級州官廳에 委任할 수 있다.

第24條(個別的命令) 行政廳은 第22條와 이 法에 의한 法規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命令을 個別的으로 發할 수 있다. 命令의 目標가 勞動保護의 目的을 위한 措置를 通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면 이렇게 命令되어야 한다.

第25條(營業停止) ① 施設의 營業者가 第24條 1文에 의한 執行可能한 命令을 履行할 수 없는 경우에는, 行政廳은 命令을 履行할 때까지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할 수 있다.

② 施設에서 나오는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이 사람의 生命, 健康 또는 重要한 價値物을 害칠 경우에는, 公衆과 이웃이 다른 方法으로 充分하게 保護될 수 없는 限, 行政廳은 施設의 設置, 營業을 全部 또는 一部 停止하여야 한다.

第3節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調査

第26條(特別排出의 測定) 行政廳은 要認可施設 또는 第22條의 不要認可施設의 營業者에게, 當該施設에서 有害한 影響이 發生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當該施設에서 나오는 「에미시온」의 種類와 範圍, 아울러 當該施設의 影響地域內에 있어서의 「임미시온」을, 上級州行政廳에 의하여 通知된 機關에서 調査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行政廳은 調査의 種類, 範圍 및 調査結果의 提出에 관하여 明細를 定할 수 있다.

第27條(「에미시온」報告) ① 負擔地域[69] (Belastungsgebiet)內 또는 ④項 2에 의한 法規命令에 표시된 要認可施設의 營業者는, 施設에서 一定期間 排出된 大氣汚染의 種類, 量 또는 地域的, 時間的分布, 排出條件等에 關하여 所定期間內에 報告할 義務가 있다. 「에미시온」報告는 每年 最新의 狀況에 相應하여 補充되어야 한다. 第52條 ②項은 여기에 準用된다.

② (稅法과의 關係 ; 租稅減免惠澤) 省略

③ 「에미시온」報告의 個別的 內容이 營業上의 秘密에 關係되는 경우에는 公開되어서는 안된다. 營業者는 「에미시온」의 種類의 範圍에 대한 公開에 앞서 聽聞할 수 있다.

④ 聯邦政府는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70]으로

1. 「에미시온」報告의 內容, 範圍, 形式, 時期 및 「에미시온」調査의 節次等을 定할 수 있고,
2. 非負擔地域의 要認可施設의 營業者에게, 그 施設에서 排出되는 「에미시온」의 種類, 크기 等을 特히 考慮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 「에미시온」報告義務를 課할 수 있다고 定할 수 있다.

第28條(要認可施設에 대한 最初測定과 反復測定) 行政廳은 要認可施設에 對하여

1. 營業開始 또는 第15條의 本質的 變更 後에,
2. 5年의 期間이 經過할 때마다 無條件 第26條에 의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

(68) 이 規定에 의하여 各州는 特定施設에 관한 規制를 할 수 있다.
(69) 이 法 第44條 參照.
(70) EmissionklärungsVO—11. BImschV—vom 20.2. 1978 (BGBI. IS. 2027) 參照.

第29條(繼續測定) ① 行政廳은 要認可施設에 對하여 第26條 또는 第28條에 의한 個個의 測定 代身 一定한「에미시온」또는「임미시온」의 繼續的 測定을 命할 수 있다.

② 行政廳은 第22條가 適用되는 不要認可施設에 대하여 第26條에 의한 個個의 測定 代身 一定한「에미시온」또는「임미시온」의 繼續的 調査를 命할 수 있다.

第30條(測定費用) 「에미시온」과「임미시온」의 調査費用은 施設의 營業者가 負擔한다. 第26條 또는 第29條[71] ②項에 따른 調査費用은, 調査結果

1. 이 法의 規定 또는 이 法에 基한 法規命令에 의한 負擔 또는 命令이 履行되지 않았거나,
2. 이 法의 規定 또는 이 法에 基한 法規命令에 의한 負擔 또는 命令이 提供되었다고 밝히지는 경우에 限하여 施設營業者가 負擔한다.

第31條(調査된「에미시온」과「임미시온」의 通知) 施設營業者는 第26條, 第28條, 第29條에 基한 調査의 結果를 行政廳의 要請에 따라 行政廳에 報告할 義務가 있다.

第3章 施設, 原材料, 製造物, 燃料 및 發動燃料의 狀態

第32條(施設의 狀態) ①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事業場 기타 固定設備와 연속된 建物, 第3條⑤項 2에 열거한 施設等이 大氣汚染, 騷音, 振動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의 防止를 위한 要件을 充足하는 경우에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으로서의 範圍內에서만 去來, 輸入될 수 있다고 法規命令으로 定할 수 있다. 이 法規命令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定할 수 있다.

1. 施設 또는 연속된 建物의「에미시온」은 所定의 限界値를 超過하지 말 것.
2. 施設 또는 연속된 建物은「에미시온」規制에 대한 技術的要件에 一致할 것.

위「에미시온」의 限界値는 法規命令 效力發生後의 技術進步를 고려하여 定한다. 위의 要件에는 第7條②項을 適用한다.

② ①項 1에 따라「에미시온」의 限界値가 法規命令에 定해진 경우에는 事業場 또는 연속된 建物은「에미시온」의 最高許容値가 報告된 때에 限하여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으로서의 範圍內에서만 去來·輸入될 수 있다.

第33條(建造方法의 許可) ①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다음과 같이 定할 수 있다.

1. 大氣汚染, 騷音, 振動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防止하기 위하여 事業場 기타 固定設備와 연결된 建物, 第3條⑤項 2에 표시된 施設은 그 建造方法이 許可되고 許可된 見本과 一致한 경우에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의 範圍內에서만 去來·輸入될 수 있다.
2. 建造方法許可節次의 規定
3. 建造方法許可에 대한 手數料와 費用을 納付하도록 定할 수 있다. 手數料는 實驗·調査에 關係된 人的, 物的 經費의 補償으로만 徵收된다.

② 建造方法은 第32條 ①項 2文에 規定된 要件을 充足하기 위하여서만 許可되어야 한다.

第34條(燃料와 發動燃料의 狀態) ①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燃料·發動燃料가 大氣汚染에 의한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을 防止하기 위한 所定의 要件을 充足하는 경우에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으로서의 範圍內에서만 製造, 去來, 輸入될 수 있다고, 法規命令으로 定할 수 있다. 이 法規命令에는 다음과 같이 定할 수 있다.

1. 合法的인 使用으로도 大氣를 汚染시키거나 大氣淸淨에 妨害가 되는 燃料, 發動燃料의 自然的인 構成部分이나 附加物은 所定의 最高限界値를 超過하지 말 것.
2. 燃料, 發動燃料는 大氣汚染規制範圍內의 所定의 混合物을 含有할 것.

---

(71) Verweisung ber. gem. BGBI. 1974 IS. 1193.

3. 燃料·發動燃料는 大氣汚染規制範圍內의 所定의 處理過程을 거칠 것.

위 要件은 法規命令 效力發生後의 技術的 進步를 고려하여 定하여야 한다.

1.~3.에는 第7條②項을 適用한다.

② 聯邦政府는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다음과 같이 定할 수 있다.

1. 燃料, 發動燃料의 輸入에 있어 ①項의 要件을 定하기 위하여 製造者는 最初의 設置場所에 運搬할 때까지 稅關에 燃料, 發動燃料의 狀態에 對하여 報告書를 提出할 것.
2. 輸入者는 이 報告書를 業務用書類로 保管할 것.
3. 燃料, 發動燃料의 狀態에 대한 어떠한 報告도 書面으로 할 것.
4. 稅關에서 排斥된 燃料, 發動燃料는 이 法의 效力領域內에서 行政廳에 報告하고 燒盡할 것.
5. 燃料, 發動燃料의 貯藏에 있어서는 證據帳簿를 備置하고 이를 基礎로 하여 注文者에게 配給할 것.

第35條(原材料와 製造物의 狀態) ①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다음과 같이 定할 수 있다.

「特定의 原材料, 製造物이 使用方法대로 使用되거나 個個 性分의 除去 내지 再生을 위하여 燃燒함으로써 大氣汚染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줄 때 有害한 影響의 防止를 위하여 諸要件을 充足하는 경우에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으로서의 範圍內에서만 製造, 輸入 기타 去來될 수 있다」

② ①項의 命令은 法規命令效力發生 以後의 技術的進步를 고려하여 定하여야 한다. ①項, ②項의 命令에는 第7條②項을 適用한다.

③ 大氣汚染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 公衆을 保護하기만 한다면 ①項의 諸要件에 關聯하여 當該 原材料, 製造物이 使用方法대로 使用되거나 燃燒됨으로써 有害한 影響이 發生할 수 있다는 것과 特定한 使用方法에 의하여 有害한 影響의 回避가 可能하다는 것을 明瞭하고 容易하게 解讀할 수 있도록 表示하여야 한다.

第36條(輸出) 製造, 輸入, 去來에 관한 規定이 이 法의 效力領域以外의 地域에서 注文한 施設, 原材料, 製造物, 燃料 및 發動燃料에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第32條~第35條의 法規命令에 定할 수 있다.

第37條(國際協定과 유럽共同體 決議의 履行) 國際協定上의 義務나 유럽 共同體의 決議를 履行하기 위하여 聯邦政府는 第1條의 目的範圍內에서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施設, 原材料, 製造物, 燃料, 發動燃料가 第32條~第35條에 따라서 定해진 命令을 履行한 경우에 營業的 또는 經濟的 企業의 範圍內에서만 去來될 수 있다고 法規命令으로 定할 수 있다.

第4章 交通機關의 狀態와 運行, 道路와 軌道의 建設과 變更

第38條~第43條 省略

第5章 聯邦領域에 있어서의 大氣汚染의 監視와 大氣淸淨維持計劃

第44條(負擔地域의 指定) ① 州政府의 行政廳은, 聯邦領域에 있어서 大氣汚染의 狀況과 進行을 認識하고, 그의 除去와 對策의 基礎를 얻기 위하여 ②項의 負擔地域內에서, 有害한 影響을 야기할 수 있는 大氣圈中의 一定한 大氣汚染의 種類와 範圍를 繼續的으로 指定하고 그의 發生, 擴散의 重要한 諸要因을 調査하여야 한다.(72)

② 負擔地域이란,

1. 汚染發生의 頻度와 繼續期間
2. 汚染의 高度의 集中度
3. 여러가지 種類의 大氣汚染의 混合作用의 危險으로 因하여, 特히 環境에 대하여 有害한 影響을 주는 大氣汚染이 發生하거나 發生이 豫測되는 地域을 말한다. 負擔地域은 州政府의 法規命令으로 定한다.

---

(72) 이는 本法 第72條 ①項에 의하여 廢止된 「大氣淸淨維持를 爲한 豫防措置法」 第1條, 第2條와 같다.

第45條(測定과 評價의 節次) 聯邦政府의 內務部長官은, 聯邦領域內에서의 大氣汚染의 狀況과 進行에 대한 統一的인 判斷이 必要한 경우에는, 第44條①項의 指定을 하기 위하여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一般行政規則[73]으로 다음과 같은 事項을 定할 수 있다.

1. 測定對象
2. 測定節次와 器具
3. 고려해야 할 原則에 따라 測定場所의 數와 位置의 決定
4. 測定結果의 評價

第46條(「에미시온」臺帳)[74] ① 州政府의 行政廳은 負擔地域에 있어서의 「에미시온」臺帳을 作成하여야 한다. 臺帳에서 一定한 施設과 交通機關에 의한 大氣汚染의 種類, 量, 地域的, 時間的 分布 및 排出條件을 記載한다.

1. 大氣汚染이 第45條 1의 測定對象으로서 定해지거나
2. 「에미시온」報告 (第27條)의 對象인 경우에 限하여,

行政廳은 定期的으로 臺帳을 再點檢하고 補完할 義務를 진다. 聯邦內務部長官은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臺帳作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基本原則을 一般行政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各州는 前項의 要件과 다른 要件아래서 「에미시온」臺帳作成을 定할 수 있다.

第47條(大氣淸淨維持計劃) 第44條①項의 指定과 「에미시온」臺帳은 氣象學的 條件을 고려하여 評價되어야 한다. 州政府의 行政廳은 負擔地域에 있어서 大氣汚染에 의한 有害한 影響이 發生하거나 發生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地域에 대한 「大氣淸淨維持計劃」을 定하여야 한다. 이 計劃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包含된다.

1. 一定한, 그리고 豫想되는 大氣汚染의 種類와 範圍
2. 大氣汚染原因에 關한 確認
3. 大氣汚染의 減少와 豫防에 관한 措置

第 6 章 共通規定

第48條(行政規則) 聯邦政府는 關係者의 聽聞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이 法과 이 法에 基하여 發한 聯邦의 法規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一般行政規則으로 定한다.

1. 第1條의 目的을 위하여 超過가 許容되지 아니하는 「임미시온」値
2. 技術水準으로 보아 超過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에미시온」値
3.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調査節次

第49條(決定地域(Bestimmtes Gebiet)의 保護) ① 州政府는 法規命令으로 다음과 같이 定한다. 大氣汚染·騷音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 特別한 保護를 必要로 하는 決定地域의 近處에서는 所定의,

1. 場所的移動이 可能한 施設은 稼動하지 말 것.
2. 場所的으로 固着된 施設은 設置하지 말 것.
3. 場所的으로 移動可能하거나 固着된 施設은 一定한 時間에만 稼動하거나 高度의 技術要件을 充足할 것.
4. 施設은 燃料를 使用하지 않거나 使用을 극히 制限할 것.

但, 施設·燃料가 이 地域의 保護必要性에 相應치 않는 大氣汚染·騷音에 의하여 環境에 對한 有害한 影響을 야기하고 또한 負擔(Auflagen)으로도 大氣汚染·騷音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

(73) 一般行政規則으로는 「負擔地域에 있어서의 Immission의 調査」가 있다(Ermittlung von Immissionen in Belastungsgebieten—4. BImSch—VwV vom 8.8. 1975, GMBI. S.358).

(74) 從來의 Immission 防止關係法에는 없는 새로운 制度이다(Ule, DVBI. 1972, S.441 參照).

② 州政府는 氣象狀況에 따라 大氣汚染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을 현저하게 增大시킬 염려가 있는 지역을 法規命令으로 定할 수 있다. 法規命令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定할 수 있다.

1. 이 地域內施設의 營業時間
2. 相當量의 大氣汚染源이 되는 燃料의 使用禁止 또는 制限

氣象狀況은 管轄行政廳에 即時 報告되어야 한다.

③ 大氣汚染·騷音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으로부터 住民을 保護하기 위한 規制를 內容으로 하는 地域法的 規定(Ortsrechtliche Vorschriften)을 發하는 市郡(Gemeinde) 및 市郡團體(Gemeindeverbände)에게의 州法上의 權限委任規定은 從前의 例에 의한다.

第50條(計劃) 空間規制的(raumbedeutsam) 計劃과 措置[75]를 함에 있어서, 特別한 利用을 위하여 준비된 土地는 住居專用地域, 準住居地域 또는 기타 保護를 必要로 하는 地域에 대한 有害한 影響이 可能한 限 回避되도록 相互 調整되어야 한다.

第51集(關係者의 聽聞) 法規命令과 一般行政規則의 制定에 關係者의 聽聞에 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選出된 學界代表, 利害當事者代表, 關係經營者代表, 關係運輸業者代表 및 管轄上級「임미시온」保護官廳等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

第52條(監督) ① 行政廳은 이 法律과 이 法律에 基하여 發한 法規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監督하여야 한다.

② 施設의 所有者·事業者, 營業中의 施設이 서 있는 土地의 所有者·占有者는, 行政廳의 職員·受任者가 公共의 安全과 秩序의 急迫한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職務遂行上 土地와 家屋에 들어오는 것을 忍容할 義務가 있다.[76] 또한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調査를 포함한 檢査實施의 許容, 情報提供 및 資料提出 義務가 있다. 이 義務의 範圍內에서 施設의 所有者와 營業者는 勞動力과 補助手段, 特히 燃料와 動力裝置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②項은 第32條 내지 第35條, 第37條의 法規命令의 規定에 따르는 限, 施設, 原材料, 製造物, 燃料 및 發動燃料의 所有者와 占有者에게도 準用된다. 所有者와 占有者는 行政廳의 職員·受任者가 業務遂行上 必要한 경우에 하는 見本品의 回收를 許容하여야 한다.

④ 認可節次의 範圍內에서 檢査에 所要된 費用은 申請者가 負擔한다.

第53條(「임미시온」保護를 위한 營業受任者의 選任) 認可를 必要로 하는 施設의 營業者는 다음과 같은 事項으로 인하여 必要한 경우 施設의 種類와 規模를 고려하여, 「임미시온」보호를 위한 營業受任者(「임미시온」保護受任者 : Immissions-schutzbeauftragte)[77]를 1人이상 選任하여야 한다.

1. 施設에서 나오는 「에미시온」
2. 「에미시온」規制의 技術的問題
3. 合法的인 使用이나, 大氣汚染·騷音·振動에 의한 環境에 대한 有害한 影響面에서 製造物의 適合性.

聯邦內務長官은 關係者의 聽聞(§51)後에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임미시온」保護受任者를 두어야 할 要許可施設을 定한다.

第54條～第65條 省略

第7章 終末規定(經過規定) : 第66條～第74條 省略

四. 獨民法(BGB)과의 관계[78]

1. §906 BGB의 規定

(75) 이 槪念에 대하여는 空間秩序法 第3條1項 參照(§3 Abs. 1. Raumordnungsgesetz vom 8.4. 1965, BGBI. IS. 306).

(76) 基本法 第13條의 住居不可侵의 基本權은 이 限度에서 制限된다.

(77) P.J. Tettinger, Der Immissionsschutzbeauftragte—ein Beliehener? DVBI. 1976, S.752ff. 참조.

(78) 鄭在吉, 獨逸法上의 Immission 法理와 民法 第217條(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1979) 參照.

1959年 12月 22日에 改正, 1960年 6月 1日부터 施行된 獨民法 第906條(임미시온 法理)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土地의 所有者는, 이웃 土地의 使用으로 발생하는 개스, 증기, 냄새, 연기, 검장, 熱, 音響(騷音), 振動의 流入(Zuführung) 및 類似한 影響(Einwirkung)이 自己의 土地利用을 妨害하지 아니하거나 侵害의 정도가 重大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하여 이를 禁止할 수 없다.

② 또한 이로 인한 土地利用의 侵害가 重大할지라도(wesentlich) 그 影響이 이웃 土地의 場所的慣行上(ortsüblich)의 利用으로 인하여 發生하고 또한 이러한 種類의 土地利用者가 經濟的으로 期待可能한 適當한 措置를 하여도 이를 防止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와같이 土地所有者가 影響을 忍容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있어서 그 影響이 自己土地의 場所的慣行上의 利用 또는 收益을 期待할 수 없을 정도로 侵害하는 때에는 이웃 土地의 利用者에게 金錢으로 適當한 調整的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特別한 誘導에 의한 流入은 許容되지 않는다.

위 ②項 後文의 調整的補償請求權과 「聯邦임미시온保護法」 第14條의 損害補償請求權의 關係 및 差異點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2. Ausgleichsanspruch(§906 ② BGB)와 Anspruch auf Schadloshaltung(§14 BImSchG)의 關係

(1) 侵害의 程度가 重大하지 아니한(非本質的인 侵害) 경우에는 加害土地의 利用의 禁止도, 損害의 補償도 모두 다 請求할 수 없다.

(2) 場所的慣行이 아닌 土地의 利用으로부터 重大한 侵害가 招來된 경우 또는 場所的慣行上의 影響이 適當한 防止措置에 의하여 防止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防止를 하지 않아서 重大한 侵害가 招來된 경우, 被害者는 §906에 의하여 加害土地의 利用을 禁止할 수 있다. 그러나 侵害가 行政廳의 認可를 받은 施設에 의하여 招來되는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고 그 대신 防止施設의 設置나 補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79,80)

(3) 侵害가 土地의 場所的慣行上의 利用에 의하여 招來되고 또 相當한 防止措置를 하여도 이를 防止

〈§906 BGB와 §14 BImSchG의 要約〉(81)

Ⅰ. 忍容義務 有 (Duldungspflicht)	Ⅱ. 忍容義務 無 (Keine Duldungspflicht)	Ⅲ. 調整的 補償請求權 (Ausgleichsanspruch in Geld)
1. 重大하지 아니한 不可量物	1. 可量物(무게있는 有體物)(82)	1. Ⅰ.2.에 있어서 被害者의 通常의 利用·收益을 기대 이상으로 侵害한 경우
2. 重大하고 場所的慣行上 利用에 의하여 발생하나 相當한 措置로 防止할 수 없는 경우	2. 重大하나 場所的 慣行上의 利用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Ⅰ.3.에 있어서 防止施設의 設置가 技術的으로 不可能하거나 經濟的으로 代替不可能한 경우.
3. 行政廳의 認可를 받은 危險한 營業	3. 重大하고 場所的 慣行上의 利用에 의하여 발생하나 相當한 措置로 防止可能한 경우	

(79) 이때 原告는 侵害의 存在만 立證하면 되고 侵害가 重大하지 않다거나 場所的 慣行上의 利用에 의하여 招來되고 經濟的으로 期待可能한 措置에 의해서도 이를 防止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는 點은 被告의 立證責任에 속한다. Soergel-Siebert, Kommentar zum BGB, Bd, 4, Sachenrecht, 10. Aufl. 1968, S.190; Lent-Schwab, Sachenrecht, 15. Aufl., 1976, S.107.

(80) 따라서 Immission에 있어서는 이른바 公共性이나 先住性 問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81)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8. Aufl., 1975, S.224.

(82) 돌파편 등(BGHZ 28, 225).

할 수 없는 경우에는 被害者는 重大한 侵害를 받더라도 加害土地 利用의 禁止를 請求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調整的 補償을 請求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는 民法上 이미 妨害排除請求權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聯邦임미시온保護法」第14條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가지 不法行爲法上의 損害賠償請求權은 責任을 그 要件으로 하며 賠償額도 全部이므로 위에 말한 어느 것과도 다르다.

〈許容된 Immission과 許容되지 않는 Immission〉[83]

妨害除去請求權 (Abwehrrecht)		賠償 (Schadensersatz) —損害賠償 또는 補償— (Schadloshaltung-Ausgleich)
Ⅰ. 有體的 Immission (grobkörperliche Imm.)	可	可 (有責의 경우, §823 BGB)
Ⅱ. 不可量的 Immission.		
1. 重要하지 않은 경우	否	否
2. 重要하나 通常的이 아닌 경우	可	可 (有責의 경우, §823 BGB)
施設이 BImSchG §4 以下에 依하여 認可된 경우	否	可 (無過失責任, §14 BImSchG)
3. 重要하고도 通常的인 경우		
a) 技術的으로 防止不可能	否	可 (§906. Ⅱ.2. BGB에 의한 補償請求權)
b) 技術的으로 防止可能하나 防止施設設置가 經濟的으로 不可能	否	可 (§906. Ⅱ.2. BGB에 의한 補償請求權)
c) 技術的으로 防止可能하거나 防止施設設置가 經濟的으로 可能	可	可 (有責의 경우, §823 BGB)

3. Ausgleichsanspruch와 Anspruch auf Schadloshaltung의 差異

「聯邦임미시온保護法」第14條의 補償請求權은 BGB의 妨害除去請求權의 存在를 前提로 하며 그것을 公益的見地에서 박탈하는 代償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이른바 Aufopferungsanspruch이다.[84] 이에 對하여 §906 BGB의 調整的補償은, 처음부터 被害者에게 妨害除去請求權이 抑制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被害者의 所有權의 內在的限界를 意味하지만 그렇다고해서 被害者에 아무런 救濟를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므로, 特히 衡平의 見地에서 補償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聯邦임미시온 保護法」第14條의 補償請求權은 妨害除去請求權의 代償으로서 全額賠償임에 反하여[85] §906 BGB의 調整的 補償은 보다 더 調整的 色彩가 짙다.

Reich 法院도 損害의 比率的 分配을 說示하고[86] 聯邦法院도 妨害除去請求權의 代償으로서의 Aufopferungsanspruch와 §906 BGB의 調整的 補償의 差異를 說明한다.[87]

그러나 이에 對하여는 Anspruch auf Schadloshaltung (§14 BImSchG)과 Ausgleichsanspruch (§906② BGB)는 勿論, 一般의 損害賠償請求權(Anspruch auf Schadensersatz)도 內容的으로 보아 本質的인 差異가 없다고 하는 見解가 있다.[88] 이 見解에 의하면 改正後의 §906 ② BGB의 調整的補償請求權은 改正

(83) Baur, a.a.O., S. 233.

(84) Mühl, NJW 1960, 1135; 이것은 犧牲補償請求權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觀念이 최초로 成文化하여 規定된 것은 1794年의 프로이센 一般州法(ALR) 序編 §74, §75에서이다.

(85) Soergel-Siebert, a.a.O., S. 192. 물론 Immission에서 생긴 全額이라는 뜻이 아니라 §906 BGB의 忍容義務의 程度를 넘는 Immission量으로부터 생기는 損害全額이라는 뜻이다.

(86) RGZ 154, 161; Westermann, Welche gesetzlichen Maßnahmem zur Luftreinhaltung und zur Verbesserung des Nachbarrechts sind erforderlich?, 1958, S. 52. 以下同旨.

(87) BGHZ 30, 273.

(88) Soergel-Siebert, a.a.O., S. 192.

前의 判例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衡平한 調整이 아니고 完全한 調整이며 損害賠償請求權과 마찬가지로 加害와 相當因果關係있는 損害의 賠償이라고 한다. 다만 利益과 不利益이 較量되고 共同的原因(過失相計)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法官에게 損害賠償의 경우보다 넓은 自由裁量이 認定된다고 한다.[89]

따라서 結果的으로 兩說은 接近한다.

五. 맺는말

이상에서 西獨의 環境統一法인 「聯邦임미시온保護法」의 成立背景과 特徵 및 그 內容을 보았고 特히 私法과의 관계를 간단히 언급했다. 이 法이 制定된지 6年이나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 별로 紹介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筆者가 감히 번역해 보았으나 誤譯된 부분은 없는지 심히 不安하다. 또한 完譯치 못하고 一部 省略한 부분도 있으니 次後에 더 깊은 硏究와 더불어 補完코자 한다.

序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70年代 後半들어 우리나라에서도 環境政策立法으로서 環境保全法이 母法的, 基本法的으로 施行되어 오고 있다. 이는 어기에 紹介한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類似하다. 이 法에 規定된 第14條의 「妨害除去請求權의 排除 및 補償請求權」 制度는 우리 環境保全法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筆者는 立法論으로 §906 BGB의 調整的補償請求制度를 우리 民法 第217條에 新設할 것과 아울러, 「聯邦임미시온保護法」 §14의 補償請求制度를 環境保全法에 新設할 것을 主張한다. 勿論 規制·防止對象인 公害現象과 保護對象인 環境과 人間의 生態 및 行態의 比較硏究와 함께.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Bundes-Immissionsschutzgesetz—BImSchG)

Vom 15. März 1974 (BGBI. IS. 721)

Erster Teil. Allgemeine Vorschriften

Zweck des Gesetzes §1
Geltungsbereich §2
Begriffsbestimmungen §3

Zweiter Teil. Errichtung und Betrieb von Anlagen

Erster Abschnitt.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 Genehmigung §4
Pflichten der Betreiber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 §5
Genehmigungsvoraussetzungen §6
Anforderungen an die Errichtung, die Beschaffenheit und den Betrieb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 §7
Teilgenehmigung §8
Vorbescheid §9
Genehmigungsverfahren §10
Einwendungen Dritter bei Teilgenehmigung und Vorbescheid §11
Nebenbestimmungen zur Genehmigung §12

(89) Soergel-Siebert, a.a.O., S. 192.

Genehmigung und andere behördliche Entscheidungen §13
Ausschluß von privatrechtlichen Abwehransprüchen §14
Wesentliche Änderung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 §15
Mitteilungspflicht §16
Nachträgliche Anordnungen §17
Erlöschen der Genehmigung §18
Vereinfachtes Verfahren §19
Untersagung, Stillegung und Beseitigung §20
Widerruf der Genehmigung §21
Zweiter Abschnitt.
Nicht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 Pflichten der Betreiber nicht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 §22
Anforderungen an die Errichtung, die Beschaffenheit und Betrieb nicht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 §23
Anordnungen im Einzelfall §24
Untersagung §25
Dritter Abschnitt. Ermittlung von Emissionen und Immissionen
Messungen aus besonderem Anlaß §26
Emissionserklärung §27
Erstmalige und wiederkehrende Messungen bei genehmigungsbedürftigen Anlagen §28
Kontinuierliche Messungen §29
Kosten der Messungen §30
Auskunft über ermittelte Emissionen und Immissionen §31
Dritter Teil. Beschaffenheit von Anlagen, Stoffen, Erzeugnissen, Brennstoffen und Treibstoffen
Beschaffenheit von Anlagen §32
Bauartzulassung §33
Beschaffenheit von Brennstoffen und Treibstoffen §34
Beschaffenheit von Stoffen und Erzeugnissen §35
Ausfuhr §36
Erfüllung von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und Beschlüss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37
Vierter Teil. Beschaffenheit und Betrieb von Fahrzeugen, Bau und Änderung von Straßen und Schienenwegen
Beschaffenheit und Betrieb von Fahrzeugen §38
Erfüllung von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und Beschlüss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39
Verkehrsbeschränkungen bei austauscharmen Wetterlagen §40
Straßen und Schienenwege §41
Entschädigung für Schallschutzmaßnahmen §42
Rechtsverordnung der Bundesregierung §43

Fünfter Teil. Überwachung der Luftverunreinigung im Bundesgebiet und Luftreinhaltepläne

Feststellungen in Belastungsgebieten §44
Verfahren der Messung und Auswertung §45
Emissionskataster §46
Luftreinhaltepläne §47

Sechster Teil. Gemeinsame Vorschriften

Verwaltungsvorschriften §48
Schutz bestimmter Gebiete §49
Planung §50
Anhörung beteiligter Kreise §51
Überwachung §52
Bestellung eines Betriebsbeauftragten für Immissionsschutz §53
Aufgaben §54
Pflichten des Betreibers §55
Stellungnahme zu Investionsentscheidungen §56
Vortragsrecht §57
Benachteiligungsverbot §58
Zuständigkeit bei Anlagen der Landesverteidigung §59
Ausnahmen für Anlagen der Landesverteidigung §60
Bericht der Bundesregierung §61
Ordnungswidrigkeiten §62
Straftaten §63
Straftaten §64
Verletzung der Geheimhaltungs pflicht §65

Siebenter Teil. Schlußvorschriften

Fortgeltung von Vorschriften §66
Übergangsvorschrift §67
Änderung gewerberechtlicher Vorschriften §68
Änderung des Atomgesetzes, des Gaststättengesetzes des Schornsteinfegergesetzes und des Abfallbeseitigungsgesetzes §69
Änderung verkehrsrechtlicher Vorschriften §70
Überleitung von Verweisungen §71
Aufhebung von Vorschriften §72
Berlin-Klausel §73
Inkrafttreten §74